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101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자산관리회사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성

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1. 5.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가.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6,982,42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6,982,4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D 사이에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27,444,73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27,444,7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단체(이하 ‘E’라고 한다)는 D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9.

3. 위 법원으로부터 ‘D은 E에게 33,816,826원 및 그 중 23,420,786원에 대하여 2009. 8. 27.부터 2009. 9. 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차2628,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9.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2. 21. E로부터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E는 2017. 12. 27. D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춘천지방법원 2019차전2980)을 신청하여 2019. 8. 28.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0. 1. 확정되었다.

라. D의 부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2. 27.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자식들인 피고들과 D, G, H, 망인의 배우자인 I는 그 무렵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2015. 3. 19.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로 2015. 2.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채무자 D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13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바, 이는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던 채무자 D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D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이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피고들이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말소되었는바,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변제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D의 상속지분인 2/13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D 사이에 2015. 2. 27.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6,982,42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6,982,42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D 사이에 2015. 2. 27.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27,444,73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27,444,7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직전인 2020. 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원고의 지위에 비추어 원고는 E로부터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할 무렵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가 있음을 알고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2) 망인의 상속재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바,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을 통해 망인의 소극재산도 상속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D의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이전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알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D이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을 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따라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당시 D이 무자력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조합에 대한 2020. 3. 31.자 및 20. 12. 4.자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감정인 K의 시가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상속재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을 통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이를 초과하는 망인의 소극재산도 상속하지 않는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을 통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D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인 원고의 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망인의 적극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387,167,180원이다.

②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에 이를 공동담보로 한 2005. 10. 14.자 채권최고액 3,9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 태백시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이를 공동담보로 한 2008. 7. 18.자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를 공동담보로 한 1996. 11. 20.자 채권최고액 6,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③ 피고 C은 2015. 3. 31. J조합에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40,776,382원을 변제하였다

④ 망인은 2011. 8. 25. J조합으로부터 4억 5,000만원을 빌리면서 J조합에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 C은 2015. 3. 31.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이자 합계 12,344,202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B은 2015. 4. 21.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원금 1억 1,000만원 및 이자 270,027원을 변제하였다. J조합은 2015. 4. 27. 위 2015. 4. 21.자 변제에 따른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태백시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망인의 처인 I로, 채권최고액을 4억 4,2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I가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잔여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 역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I는 2015. 6. 15.경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잔여액 합계 340,871,145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은 합계 387,167,180원 상당인

반면, 망인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4억 9,000만원 이상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명중

[별지]

목 록

1. 강원도 태백시

잠종지 840㎡

2. 강원도 태백시

잠종지 620㎡

3. 강원도 태백시

[도로명주소]

강원도 태백시

백담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3.63㎡, 끝.

